

---

# 「무선국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용역 제 안 요 청 서

---

2023. 01.



전파기반본부 검사기획팀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 (1)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 (2)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3)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6)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7)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9)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0) 계약해제·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1)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2)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3)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 (14)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15)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 (16)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 (17)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 (18) 한국방송통신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8.31.)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보호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 목 차

I . 사업 개요 .....	1
II . 제안요청내용 .....	3
III .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	10
IV . 입찰안내 .....	16
V . 별지서식 .....	17

|

## 사업개요

1. 사업명 : 무선국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용역
2. 사업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주무부처의 전파관리 정책지원과 효율적인 전파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사항 도출 등 관리체계 개편의 기반 자료

### 5. 추진 목적 또는 추진목표

-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가 상이한 동일 시설자·설치장소의 무선국 검사 시기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전파관리체계 구축

### 6.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 「II.제안요청내용」 참조

- (제도정비 방안)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를 위한 정기검사 실시, 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세부 방안 도출
- (관리체계 개편) 동일 시설자·설치장소 단위 무선국 일괄검사를 위해 설(상)치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코드 구성 및 부여
- (주소 정비) 무선국 허가DB 주소 오류\* 수정 및 신·구주소가 혼재된 무선국 주소 정보를 통일하여 연도별·지역별 무선국 검사구역 획정  
\* 공란·오기·오탈자, 전산 연동 누락, 등록말소된 주소 등
- (효과 분석) 검사 시기 일원화, 동일 시설자·설치장소 무선국 일괄 검사 시 현검사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한 인력, 비용 등 효과 제시

## 7. 추진일정 및 절차

절차	일정	수행기관	주요 내용
입찰공고	2월	KCA	용역 입찰공고
제안접수마감	2월	KCA	제안서 접수마감
평가.선정	2월	KCA	기술제안서 평가
기술 협상	일정 통보	KCA, 제안사	기술협상
계약체결	2023.3월 중	KCA, 제안사	계약체결
중간 점검	2023.4월 중	제안사	보고서 초안 검토
최종 보고	2023.6월 중	제안사	보고서 발간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1. 제안 요청 사항

#### □ 사업개요

- (사업명) 무선국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용역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 (사업예산)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VAT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_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주무부처의 전파관리 정책지원과 효율적인 전파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사항 도출 등 관리체계 개편의 기반 자료
- 이동통신 무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협의회에서 동일 설치장소 무선국 정기검사 연도 일원화를 '23년 운영계획 안건으로 채택

#### □ 사업목표

- 검사 시기가 상이한 동일 시설자·설치장소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사항 도출 및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 법령 제도정비 방안 도출, 무선국 표준화 코드 구성 및 부여, 무선국 허가DB 주소 정비 및 검사구역 획정, 인력 및 비용 등 효과 제시

## □ 주요 과업내용

### 1.1.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법령 개정안 마련

- 전파법·동법 시행령 전수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 발굴

< 발굴 대상 유형 >

- ① 무선국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규정
- ②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 ③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 ④ 무선국 일괄검사를 실시할 경우 제·개정이 필요한 규정 및 서식  
※ 표준화 코드 정의, 구성체계, 관련 서식 작성란 신설 등

- 법령 전수조사 및 검토 결과 발굴된 위 법령의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를 위한 정비안 제시

- 전파법·동법 시행령 동시 제·개정을 고려한 정비방안 도출(안)
- 전파법 시행령 단독 제·개정을 고려한 정비방안 도출(안)

- 정비방안에 따라 법령 정비 시 함께 정비가 필요한 고시 정비안 및 고시 목록 제시

### 1.2. 무선국 주소 정비 및 검사구역 획정

- 무선국 허가주소 오류<sup>\*</sup> 수정 및 신주소·구주소가 혼재된 정보를 구주소로 통일하여 정비

- 변환된 주소정보에 현재 법정동 코드를 부여하여 구분
  - \* 공란·오기·오탈자, 전산 연동 누락, 등록말소된 주소 등

- 정비된 무선국 설(상)치장소에 식별 가능한 표준화 코드 부여
  - 무선설비 장소 표준코드 구성체계 [예시 표] 참조

## [예시 표] 무선설비 장소 표준코드 구성 체계(안)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별표 00] <개정 2000. 00. 00.>

### 무선설비 장소 표준코드 구성 체계(제7조 관련)

무선설비 장소 표준코드는 무선설비가 설치 또는 상치된 장소의 종류, 정부 법정동 코드, 번지, 세부정보 등으로 다음 표와 같이 구성한다. 정보간 구분은 언더바( \_ )로 표시한다.

정보 구분	문자 및 기호
1. 첫 번째 정보 : 통신목적 및 무선설비가 설치된 장소 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무선국으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또는 예정인 장소에서 지면, 건물 상면 등에 설치 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무선국으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또는 예정인 장소에서 지하·건물내 등 설치 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무선국으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번에서의 철탑, 강관주, 통신주 등에 설치 라.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무선국으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번에서의 지하·터널 등에 설치 마. 육상에서 이동하며 통신하는 무선국으로 차량, 건설기계 등에 상치 바. 해상에서 이동하며 통신하는 무선국으로 선박에 상치 사. 항공에서 이동하며 통신하는 무선국으로 항공기에 상치 아. 기타	1 2 3 4 5 6 7 8
2. 두 번째 정보 : 설치 또는 상치된 장소 법정동 코드 10자리	법정동 코드 적용
3. 세 번째 정보 : 주소 가. 첫 번째 정보의 가, 나의 경우 나. 첫 번째 정보의 다, 라의 경우 다. 첫 번째 정보의 마, 바, 사, 아의 경우	도로명 주소 지번 0
4. 네 번째 정보 : 취사형 세부장소 가. 첫 번째 정보의 가, 나의 경우 나. 첫 번째 정보의 다, 라, 마, 바, 사, 아의 경우	세부내용 (101동, 가동 등) 세부내용 (반영될 내용이 없을 경우 0)

비고) 무선설비 장소 표준코드 구성 예시 : 1\_1111010300\_궁정로3-23\_101동

구분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정보	세 번째 정보	네 번째 정보(취사선택)
내용	1	1111010300	궁정로3	101동
의미	통신목적 및 장소	법정동 코드	주소	세부 장소

- 표준화 코드가 부여된 무선국을 KCA 10개 지방본부 관할구역 기준으로 연도별 일괄검사 시뮬레이션 분석 및 검사구역 획정

----- < 분석 방법 및 검사구역 획정 기준 > -----

- ① 연도별 일괄검사는 무선국 단위를 기준으로 5개년 균등하게 분할하여 특정 연도에 검사대상 무선국이 가중되지 않을 것
- ② 연도별 무선국 분할 작업의 경우 직전 검사일을 고려해야하며 검사주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③ 연도별 검사구역 획정에 따른 매년 검사수수료 세입 편차는 5년 평균 오차범위  $\pm 10\%$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④ 검사구역 획정은 5개년 균등하게 분할하되, 매년 최소 행정구역 단위(법정동)로 미방문 지역이 발생하지 않을 것

### 1.3. 현재 검사제도와 비교분석

-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를 통한 동일장소 일괄검사 시 현재 검사 제도 대비 인력, 비용 등 효과 분석

- 무선국 정기검사 효율성 및 무선국 검사수수료 세입 변화율 등

## 2. 기타 요청 사항

### □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조직체계, 운영 방안 및 기술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수행 및 관리, 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제안사는 사업책임자 및 세부과제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제안사의 참여인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

## 수준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PM)는 본 사업의 참여를 원칙으로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수행인력의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발주기관은 수행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함

## □ 업무수행 조건

- 제안사는 착수회의 이전에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 및 참여인력 등 세부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하여야 함
- 각 과제별로 진행되는 사업화 전략 수립 경과에 대해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간 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만 보고서 형태, 시기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매우 부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원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 □ 보안조치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누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

## □ 기 타

- 제안서에 제출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우리원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 3. 산출물 제출 및 보고사항

### □ 산출물의 제출 및 검토·승인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는 작업(공정) 및 산출물을 기준으로 상세 일정계획 및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 작성된 산출물은 반드시 정해진 제출시기에 작성·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 정기 및 수시보고

- 사업수행 진척상황 및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의 보고 유형에 따라 착수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등을 수행하여야 함

구분	주요 내용	시기	보고방법
착수보고	○ 사업 수행계획 보고 ○ 사업 수행방안 협의	계약 후 10일 이내	보고회 or 서면
중간보고	○ 추진계획 대비 실적보고 - 계획대비 일정 변경사항 - 추진내용 및 단계별 결과	중간 보고시	보고회 or 서면
최종보고	○ 사업추진결과 보고 ○ 최종성과물 제출	계약 종료 10일 전	보고회 or 서면
수시보고	○ 주요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필요시	보고회 or 서면

※ 내용 및 시기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진도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수시회의 지속 개최

#### 4.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모든 제작물(이미지, 사진 등) 등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 및 협상 등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등 관련 규정에 의함

### 1.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규격 : A4, PDF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발생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서는 목차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 KS, 관련법규, 표준규격 등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시한다.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공고문에 명시한 기한 내 완료하여야 하며, 제출 완료 후 추가 또는 수정, 변경은 할 수 없다.

## □ 제안서 목차 및 구성

○ 제안서 표지에 사업관리자(PM) 연락처(전화번호, e-메일 등) 기재

작성 항목	작성 방법
<b>I. 제안개요</b> 1. 제안 목적 2. 수행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li></ul>
<b>II. 제안사 일반</b>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li><li>○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li></ul>
<b>III. 사업수행부문</b> 1. 개요 2. 추진목표 및 전략 3. 주요 사업내용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5. 결과물 제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li><li>○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li><li>○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li><li>○ 제안요청 내용 세부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세부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li><li>•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li><li>•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li></ul></li><li>○ 사업완료 시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li></ul>
<b>IV. 사업관리 부문</b> 1. 추진일정 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5. 기밀보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li><li>○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li></ul></li><li>○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li><li>○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li><li>○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li></ul>
<b>V. 결과 활용성 부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활용성 제고방안 제시</li></ul>
<b>VI. 첨부자료</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안서 이외의 별지서식 자료 등</li></ul> <p>*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p>

□ 제안서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 구비 서류

구분	주요 내용
정량 제안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정성 제안서	※ 별지 서식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로 활용
기타서류	※ V. 별지서식 참조

## 2. 제안서 평가기준

□ 낙찰자 결정방식 : 제안평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68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선정. 단, 최저 및 최고 점수에 동일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평가점수만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함
- 입찰가격평가는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 (1) 정량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기준(항목설명)	배점
사업일반 (10)	경영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평가</li> <li>-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름</li> </ul>	10

### (2) 정성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기준(항목설명)	배점
사업일반 (20)	사업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 및 내용 이해도</li> <li>○ 제안요청내용과의 부합성</li> </ul>	10
	관련분야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전문성 및 강점</li> <li>○ 사업 추진 관련 기술·지식 보유</li> </ul>	10
사업수행 (25)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의 우수성</li> <li>○ 사업수행방법의 효과성 및 타당성</li> </ul>	10
	수행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법의 구체성,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li> <li>○ 과제 세부 활동 도출 및 사업관리 방안의 타당성</li> </ul>	10
	수행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체계의 적정성 및 인력배분의 적절성</li> <li>○ 참여인력의 전문성</li> </ul>	5
사업관리 (25)	관리방안 및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계획의 적정성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li> <li>○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li> </ul>	10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출물의 구체성 및 우수성</li> <li>○ 산출물의 객관성 확보 방안 및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구체성, 실현 가능성</li> </ul>	10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척관리, 위험관리, 보고체계의 적정성</li> </ul>	5
계			70

###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평점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3.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발표방식 : e발주시스템(온라인평가)
  - 발표시간 : 총25분(발표15분, 질의응답10분)
  -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
- 유의사항
  - 평가를 위한 제안서 발표 관련 일시, 장소, 발표시간은 KCA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마감 후 입찰담당자가 개별 통보함

-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발표는 불허(제출한 제안서 기준으로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없음

#### 4. 관련 문의

○ 사업관련 : 박지왕(전파기반본부 검사기획팀)

- 전화 : 061-350-1595 / 이메일 : [jiwang@kca.kr](mailto:jiwang@kca.kr)

○ 입찰관련 : 박민건(안전경영지원단 재무회계팀)

- 전화 : 061-350-1373 / 이메일 : [mingunp@kca.kr](mailto:mingunp@kca.kr)

## 1. 입찰방식 : 자체조달, 제한경쟁입찰

##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V

##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별지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별지 제4호]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별지 제1호 서식]

## 정보 비공개 동의서

회사명 :

주소(소재지) :

성명(대표자) :

본인은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무선국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전화번호(대표)	
주소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설립년도		사업분야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 [별지 제3호 서식]

###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제출일 기준)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성명			연령	만 세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속 및 직위				
본 과업에서의 역할				

###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